

서울특별시마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 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

1999. 9. 14

시민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99. 9. 9. 마포구청장
- 나. 회부일자 : '99. 9. 9.
- 다. 상정일자 : 제64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99. 9. 14)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정해석 환경과장)

가. 제안이유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예관한법률및동법시행령 개정예 따라 행정규제 사무와 관련된 일부조항을 완화 및 삭제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기준이 동법시행령 제35조 제3항에 의거 신설됨에 따라, 동조례 중 불필요하게 된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코자 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정화시설의 야간청소와 관련하여 경찰청의 도로교통규제 고시 지역에 대한 야간청소 규정은 청소사례가 없고 현실과 맞지않아 삭제(안 제5조제1항)
- 분뇨수집운반 등의 영업대행계약서의 시설 및 장비기준은 분뇨수집운반업 및 정화조청소업을 하고자 하는자의 시설 및 장비기준으로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안 제9조제2항)

- 분뇨관련 영업의 허가와 관련하여 분뇨수집 운반업 및 정화조 청소업을 하고자 하는자의 시설 및 장비 기준은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안 제16조)
- 정화조 청소업자의 의무사항 중 청소작업일지 보관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조정(안 제17조제2항)
- 제19조제4항 및 동항관련 별표4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삭제함

·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김건재 전문위원)

- 동 조례(안)은 생활오수 및 축산폐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 개정(1999.2. 8 법률 제5864호)되고,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동법시행령이 개정(1999. 8. 6 대통령령 제16508호)됨에 따라 영제27조 및 영제27조의2 등에 분뇨관련 영업허가 조건 등의 신설로 안제16조에 규정한 분뇨관련 영업의 허가 등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이 영제35조제3항에 신설되어 안제19조제4항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하는 등 우리구 조례의 관련 조문을 상위법과 일치시키며,
-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 계획에 따라 구민에게 불편을 주고있는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4조 관련 별표15에 분뇨및축산폐수의수집·정화조 청소일지를 작성하고 수수료 징수내역 등 영업과 관련된 서류를 3년이상 보존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안 제17조제2항 중 청소작업 일지를 작성하여 3년간 보관하도록 한 규정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 질의요지(이천규 위원) : 제19조제4항에서 별표4의 내용은?
- 답변요지(정해석 환경과장) : 별표4는 과태료 부과기준임.
- 질의요지(이천규 위원) : 제17조제2항에서 5년을 3년으로 한다는 내용은?
- 답변요지(정해석 환경과장) : 청소작업일지 보관기간을 상위법에 규정이 있으므로 5년에서 3년으로 완하하는 것임.
- 질의요지(김유현 위원) : 제5조제1항에서 청소사례가 없다고 하여 삭제해도 되는것인지?
- 답변요지(정해석 환경과장) : 제5항 전부를 삭제하는 것이 아니고 제1항만 삭제하고 제3항이 남아 있기 때문에 자율권을 부여하여 야간청소도 가능함.
- 질의요지(김유현 위원) : 제17조제2항에서 청소작업일지 보관을 구태여 5년에서 3년으로 할필요가 있는지?
- 답변요지(정해석 환경과장) : 상위법에 3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례도 3년으로 조정하는 것임.
- 질의요지(윤정용 위원) : 제5조제1항에서 야간청소를 삭제한다고 하였는데 요즈음 맞벌이 부부도 많고 그래서 아침에 한두시간 당겨서 청소를 하면 어떨는지?
- 답변요지(정해석 환경과장) : 그렇게 하도록 하겠음.
- 질의요지(윤정용 위원) : 과태료 건수는 얼마나 되는지?
- 답변요지(정해석 환경과장) : 전화독려 및 홍보를 많이 해서 과태료 부과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음. 앞으로도 과태료 부과건수가 적어 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질의요지(윤정용 위원) : 주간청소 시간은 몇시부터 몇시까지 인지?
- 답변요지(정해석 환경과장) : 주간청소는 06:00~18:00까지임.
- 질의요지(윤정용 위원) : 정화조 청소가 기존 대행업체수로는 마포구 관내를 전부 관할하기엔 부족한 것 같은데 대행업체를 1개 더 늘릴수는 없는지?
- 답변요지(정해석 환경과장) : 서울시 25개구에서 2개업체가 관장하는 것도 많지 않음. 3개업체로 하면 손해가 발생함.

5. 토론요지 : 수정(안) 가결할 것을 동의

6. 수정안 요지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1999. 9. 14. 권오범 위원외 1인

나. 수정이유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을시행규칙 제84조 관련 별표15에 분뇨및축산폐수의수집·정화조 청소일지를 작성하고 수수료 징수내역 등 영업과 관련된 서류를 3년이상 보존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안 제17조제2항 중 청소작업 일지를 작성하여 3년간 보관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입법체계상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하고자 함.

다. 수정 주요골자

○ 안 제17조제2항을 "정화조 청소업자는 매월 청소실적과 수수료 징수실적을 익월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함.

7.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마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제안년월일 : '99. 9. 14.

제안자 : 시민도시위원장

1. 수정이유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84조 관련 별표 15에 분뇨및축산폐수의수집·정화조 청소일지를 작성하고 수수료 징수내역 등 영업과 관련된 서류를 3년이상 보존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안 제17조제2항 중 청소작업 일지를 작성하여 3년간 보관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입법체계상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하고자 함.

2. 수정 주요골자

- 안 제17조제2항을 "정화조 청소업자는 매월 청소실적과 수수료 징수실적을 익월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함.

서울특별시마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마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정화조 청소업자는 매월 청소실적과 수수료 징수실적을 익월5일
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 정 안 조 문 대 비 표

원 안	수 정 안
<p>제 17조(정화조청소업자의 의무)</p> <p>① (생략)</p> <p>② 정화조 청소업자는 매월 청소실적과 수수료 징수실적을 익월 5일까지 구청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청소작업일지 를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p>	<p>제 17조(정화조 청소업자의 의무)</p> <p>① (생략)</p> <p>② _____ _____ _____ 제출하여야 한다.</p>

서울특별시마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1999. 8.

제출자 :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행정 규제 사무와 관련된 일부조항을 완화 및 삭제하여 시민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기준이 동법시행령 제35조제3항에 의거 신설됨에 따라, 불필요하게 된 동조례 중 과태료 부과 기준을 삭제코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정화시설의 야간청소와 관련하여 경찰청의 도로교통규제 고시지역에 대한 야간청소 규정은 청소사례가 없고 현실과 맞지않아 삭제(안 제5조제1항)
- 나. 분뇨수집운반등의 영업대행계약서의 시설 및 장비기준은 분뇨수집운반업 및 정화조청소업을 하고자 하는자의 시설 및 장비기준으로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안 제9조제2항)
- 다. 분뇨관련 영업의 허가 와 관련하여 분뇨수집운반업 및 정화조청소업을 하고자 하는자의 시설 및 장비 기준은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안 제16조)
- 라. 정화조 청소업자의 의무사항 중 청소작업일지 보관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조정(안 제17조제2항)
- 마. 제19조제4항 및 동항관련 “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4를 삭제함.

3. 개정근거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1999. 2. 8 법률 제5864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1999. 8. 6 대통령령 제16508호)

4. 조례(안) : 별첨

5. 예산조치필요성 : 없음

서울특별시마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을 삭제하고 동조제2항중 “경찰청고시지역 이외의 지역에서”를 삭제한다

제6조중 “제19조제1항”을 “제18조제1항”으로 한다.

제9조제2항중 “별표2의 요건을 갖춘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하며”를 삭제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제17조제2항중 “5년”을 “3년”으로 한다

제9조제2항 관련 별표2, “분뇨관련 영업 대행계약의기준”은 삭제한다

제19조중제4항을 삭제하고, 동조동항관련, 별표4의 “과태료부과기준”을 삭제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정화시설의 야간청소)①구청장은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도로교통규제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이하 “경찰청고시지역”이라 한다)안의 정화시설에 대하여는 야간청소를 실시하여야 하며, 별도로 차량 운행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②구청장은 경찰청 고시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심한교통체증을 유발하거나 도심환경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정화시설에 대하여 야간청소를 실시할수 있다 이 경우 해당지역을 미리 고시하여야 한다</p> <p>③(생략)</p> <p>제6조(분뇨의 수집운반)구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구역안의 분뇨를 수집 운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별 지역별 7일내지 15일 간격으로 일정을 정하여 순회 수거하여야 한다. 다만,시민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p> <p>제9조(분뇨수집운반등의대행)①(생략)</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하게 할 때에는 별표2의 요건을 갖춘자와 대행계약을체결하여야 하며, 대행계약서에 다음 각호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제5조(정화시설의 야간청소)(삭제)</p> <p>②----- (삭 제)----- ----- ----- ----- -----</p> <p>③(현행과 같음)</p> <p>제6조(분뇨의 수집운반)----- 제18조제1항----- ----- ----- ----- -----</p> <p>제9조(분뇨수집운반등의대행)①(현행과같음)</p> <p>②----- ----- (삭 제)----- ----- -----</p>

현행	개정안
<p>1. ~ 5.(생략) ③ (생략) 제16조(분뇨관련 영업의 허가등)①구 <u>청장은 법 제35조제1항 및 규칙 제 79조,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수집 운반업 및 정화조 청소업을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시설·장비·기술능력등요건을 고려하여 허가 또는 변경 허가하여야 한다</u> 제17조(정화조 청소업자의 의무)①(생략) ②정화조 청소업자는 매월 청소실적과 수수료징수실적을 익월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청소작업일지를 작성하여 5년 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9조(과태료의 부과징수)①~③ (생략) ④법제5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태료부과기준은 별표4와 같다 ⑤~⑨(생략)</p>	<p>1. ~ 5.(현행과 같음) ③(현행과 같음) (삭 제) 제17조(정화조 청소업자의 의무) ①(현행과 같음) ②----- ----- ----- -3년----- 제19조(과태료의 부과징수)①~③ (현행과 같음) (삭 제) ⑤~⑨(현행과 같음)</p>